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5. 16.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4.27.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7.5.2.

다. 상정일자 : 제212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17.5.16.)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주택과장 이흥주

가. 제안이유

기존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2016. 8. 12.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위임 근거 조문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법령위임 근거 조문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안 제1조, 제2조)

3. 검토보고 (김용범 전문위원)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이 개정되고,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2016. 8. 12)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1조 중 “「주택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을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중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을 “「공동주택관리법」 제49조”로 개정한 바, 이는 조례의 근거법인 「주택법」이 개정되고,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